

경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-42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-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,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연구·계승·발전시키며, 이를 교육·문화·인문학 분야와 연계하여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유교·도교·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, 음양오행론, 역학, 명리학, 풍수지리, 전통예술과 생활문화 등 동양문화 전반을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, 전통지식을 현대사회의 인간 이해, 교육, 상담, 문화콘텐츠 및 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실용적이고 융합적으로 발전시킨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전반에 관한 기초·응용 연구
2. 한국·중국·대만·홍콩·싱가포르·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문화에 관한 교류 및 비교연구
3. 유교·도교·불교·동학 및 기타 동양사상에 관한 학술연구
4. 음양오행론, 역학, 명리학 및 전통적 인간 이해 체계에 관한 연구
5. 풍수지리, 전통 공간문화 및 현대 인테리어풍수에 관한 연구
6. 한국 전통문화·생활문화·민속문화에 관한 연구 및 타 전문연구소와의 공동연구
7. 동양철학과 타로, 성명학, 현대 인문학·교육학·상담·심리·리더십 분야의 융합연구
8. 동양문화 관련 학술대회, 세미나, 포럼, 초청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
9. 국내외 대학, 학회, 연구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기관 등의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수행
11. 동양문화 관련 평생교육, 시민인문학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12. 동양문화 관련 교재, 연구자료, 학술총서 및 문화콘텐츠 개발
13. 전통문화 및 동양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·봉사사업
14. 동양문화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의 수집·정리·번역·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15. 동양문화 관련 춘·추계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또는 연구총서 발간
16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기구

제5조(연구실)

- ① 본 연구소는 연구 목적과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 1. 동양철학연구실
 2. 명리역학연구실
 3. 풍수문화연구실
 4. 전통문화연구실
 5.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
 6. 인문교육·상담연구실
 7.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연구실
- ② 각 연구실의 설치·통합·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 6 조(기구)

- ①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, 분야별 국 및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-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연구팀, 학술위원회, 자문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연구소의 구체적인 조직과 사업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구성원

제 7 조(임원 및 구성원)

-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1. 소장 1 명
 2. 부소장 1 명
 3. 운영위원 약간 명
 4. 국장 3 명
 5. 연구실장 약간 명
 6. 감사 1 명
- ②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 1. 연구교수 약간 명
 2. 상임연구원 약간 명
 3. 비상임연구원 약간 명
 4. 객원연구원 약간 명
 5. 특별연구원 약간 명
 6. 자문위원 약간 명
 7. 조교 약간 명
 8. 외부 특수연구원 약간 명 (연구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)

제 8 조(자격 및 임명)

- ① 소장은 동양문화·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소 운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- ② 부소장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연구·행정 운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소장 및 부소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. 다만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.
- ④ 운영위원은 동양문화·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의 전공자, 연구자 또는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국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
- ⑥ 편집국장은 제 6 조 제 1 항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.
- ⑦ 연구실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
- ⑧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며, 다른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⑨ 연구교수 및 각급 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⑩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술적·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자 가운데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.
- ⑪ 임원 및 연구원의 위촉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지향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 9 조(소장의 직무)

-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연구, 교육, 학술교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, 연구사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·교육·학술 및 대외사업을 기획·추진한다.

제 10 조(부소장의 직무)

- 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일상적인 연구·행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연구소의 인사 및 연구인력 운영에 관한 업무
 - 2. 연구원, 연구실 및 사업 담당자의 구성·배치와 업무조정
 - 3. 연구소 사업의 예산관리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
 - 4. 연구사업,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에 관한 실무 운영
 - 5. 연구소 수입·지출 및 운영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
 - 6. 연구소의 행정 및 대외협력 실무
 - 7.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관리
 - 8. 각 연구실 간 업무조정
 - 9. 기타 소장이 위임하는 업무
- ③ 연구소의 인사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장의 지시하에 부소장이 집행한다. 다만 연구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 또는 예산 외의 주요 재정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 11 조(직무대행)

- ① 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부소장이 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·주재할 수 있으며, 연구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2 조(연구실장의 직무)

- ① 연구실장은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고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.
- ② 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
 2.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공동연구 관리
 3. 학술행사 및 연구사업의 기획
 4. 연구실 연간 연구실적 및 결과보고
 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 12 조의 2(국장의 직무)

-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을 두며, 각 국에 국장 1 명을 둔다.
 1. 학술국
 2. 편집국
 3. 정보디지털국
- ② 국장은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고 해당 국의 사업을 관장한다.
- ③ 각 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학술국
학술대회·세미나·초청강연의 기획과 운영, 연구과제의 발굴·관리 및 국내외 학술교류
 2. 편집국
학술지·연구총서의 발간과 편집, 원고의 접수·심사 관리 및 출판에 관한 업무
 3. 정보디지털국
연구소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학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,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회원·개인정보의 관리
- ④ 국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- ⑤ 국의 설치·통합·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 12 조의 3(운영위원의 직무)

- ①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연구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방향에 따라 연구 및 교육사업, 학술활동, 대외협력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1.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2. 연구 및 교육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
 3. 연구실의 설치·통합·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4.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 5. 연구과제의 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

6. 국내외 대학·학회·연구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
7. 연구원, 연구실장, 자문위원 등 주요 인력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연구소의 주요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
9. 학술지·학술총서·연구자료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
10. 연구윤리 및 연구활동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·문화·연구사업에 관한 사항

제 13 조(임기)

- ①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4 조(해임 및 사임)
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 1.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2.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 3.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- ② 임원은 사임하고자 할 때 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소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.
- ③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운영의 자율성

제 15 조(자율운영의 원칙)

-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관련 학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술연구 조직으로 출범한다.
- ② 연구소의 연구활동, 학술행사, 세미나, 연구모임, 교육 및 기타 자체 사업은 학과 및 연구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, 별도의 학교 행정절차나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.
- ③ 연구소는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구소 자체의 인적·물적 자원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연구소의 내부 조직, 연구원 구성, 연구과제, 세미나 및 학술활동 등 일상적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.

제 16 조(학교와의 협력)

- ①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정협조, 시설지원, 재정지원, 연구과제 수행, 학교 명의의 대외사업 또는 기타 학교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학교 관계 부서와 협의한다.
- ② 제 1 항의 협력 여부와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, 필요성 및 연구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

- ③ 학교와의 협력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절차 또는 학교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학교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④ 학교 행정과의 협력은 연구소의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

제 17 조(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운영위원, 각 국장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② 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.

제 18 조(소집)

-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- ② 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부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④ 회의 소집 시 안건을 사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9 조(의결)

-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- 2. 임원의 해임
- ③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 20 조(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
- 2. 연구 및 사업계획
- 3. 연구실의 설치·통합·개편 및 폐쇄
- 4. 연구소의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
- 5. 소장 및 감사의 선임
- 6. 주요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
- 7. 학술대회, 세미나, 연구과제 및 교육사업
- 8.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- 9. 연구원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
- 10. 학술지, 연구총서 및 출판사업

11.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
12. 경기대학교와의 행정·재정·시설 및 제도적 협력에 관한 사항
13.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
14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6 장 연구실

제 21 조(설치)

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목적, 주요 연구분야, 사업계획,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.

제 22 조(구성)

연구실은 연구실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 23 조(연구분야)

각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동양철학연구실
유교·도교·불교, 한국철학, 중국철학, 동아시아 사상 및 관련 고전 연구
2. 명리역학연구실
음양오행, 천간·지지, 주역, 명리학의 역사·이론·고전문헌 및 현대적 활용 연구
3. 풍수문화연구실
전통 풍수이론, 공간철학, 주거문화, 환경과 인간의 관계 및 전통건축 연구
4. 전통문화연구실
민속, 세시풍속, 의례, 전통예술, 생활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연구
5.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
동양문화의 출판·영상·디지털콘텐츠·문화산업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·인공지능 방법론의 활용
6. 인문교육·상담연구실
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, 평생교육, 리더십, 인간관계, 자기이해 및 상담 프로그램 연구

제 7 장 학술 및 교육사업

제 24 조(학술사업)
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학술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
2.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움
3. 전문가 초청강연
4. 국내외 공동연구
5. 동양철학 및 고전강독
6. 연구논문 및 학술총서 발간

7. 동양문화 관련 학술자료 번역·정리
8.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사업
9. 지도자 양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 후 자격증 발급
10. 일반강의, 인재파견 및 특수 교육사업
11.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·컨설팅 사업

제 25 조(교육사업)

연구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동양철학 및 동양문화 교육
2. 명리학·역학·풍수 관련 학술·교양교육
3. 시민인문학 및 평생교육
4. 지도자 및 전문가 과정
5. 청소년 및 성인 인성교육
6. 동양철학 기반 리더십 및 인간관계 교육
7. 문화답사와 전통문화 체험
8.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교육사업

제 26 조(연구윤리)

- ①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장 재정

제 27 조(재정)

- ①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 사업 수입, 연구사업 수입, 교육사업 수입, 후원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.
- ② 연구소의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③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의 자금집행은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소장의 지시하에 부소장이 담당한다.
- ④ 예산 외의 중요 지출, 대규모 사업비 집행 또는 연구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- ⑤ 자금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28 조(감사)

- ① 감사는 연구소의 재정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② 감사는 연 1 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는 연구소가 이를 제공하며, 관련자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한다.

제 9 장 기타

제 29 조(대외협력)

- ① 국내외 대학, 학회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.
- ②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소장이 체결한다. 다만 연구소의 재정 또는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- ③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명의, 행정 또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외협력은 제 16 조에 따른다.

제 30 조(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활동)

- ① 동양문화학과 소속 구성원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으며, 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②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·단체 및 연구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하여는 부소장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장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제 2 항의 결정은 연구소와의 관련성, 협력 가능성, 학술 및 연구소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.
- ④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연구소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소장은 필요에 따라 활동 범위와 참여 권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⑤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연구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1 조(기타)

-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② 경기대학교의 공식 행정지원이나 제도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관계 부서와 별도로 협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설립 및 초기 운영)

-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관련 학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학과의 자율적 연구조직으로 2026 년 9 월 1 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.
- ② 설립 초기에는 학과 및 연구소 자체의 인적·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.
- ③ 향후 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정·시설·재정 또는 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.

제 3 조(초대 임원)

연구소 출범 당시의 초대 소장, 부소장, 감사 및 운영위원 등 임원의 구성은 설립 준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, 연구소 출범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인을 받는다.